

16세기를 전후한 班家의 形式變化와 家禮

金基柱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수료)

金聖雨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1. 머리말

조선시대 班家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시기적으로 조선후기의 주택에 집중되었고, 그 이전 15·16세기의 주택에 대한 연구가 소홀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현존하는 17세기 이전의 주택 유구가 많지 않고,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모습이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원형을 알기 힘들다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현재 그 수가 많이 남아 있는 조선후기의 주택이 조선시대 전체를 통괄하는 대표적인 형식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즉, 현존하는 班家에서의 祠堂, 大宗家에서 볼 수 있는 祭廳, 주택의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큰 규모의 사랑채, 그리고 사랑채와 안채의 공간적 구분 등이 조선시대 전체에 걸친 典型的인 班家의 형식인 것처럼 일반인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班家의 典型的인 形式이 조선 초기 혹은 그 이전 시기에 이미 완전한 형식으로 자리잡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사회구조의 변천 속에서 변화의 과정을 거치며 정착되어 온 결

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거주자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주택은 사회구조와 생활관습의 변화에 따라 형식을 달리하는 변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그러한 변화에 있어서는 변화의 계기가 반드시 필요하며, 변화의 시점 역시 중요하다. 조선시대 班家의 형식에 대해서도 후기의 반가형식을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면 그러한 변화의 계기가 무었이었으며, 또 변화의 시점이 언제였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 16세기는 조선의 燕山君 (1495-1506)과 中宗代 (1506-1545)부터 宣祖代 (1568-1609)에 걸치는 시기로서 정치사적인 측면에 있어서나 사회 경제 사상사적인 측면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다.¹⁾ 특히 고려 말에

1) 이러한 16세기의 변화에 관하여서는 강만길 교수의 글('16세기사의 변화',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창작과 비평사, 1979)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그는 이 글에서 16세기에 있었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내부적인 변화가 17세기 이후 전개되는 조선의 역사에 있어서 16세기 말 임진란으로 대표되는 외부적 요인보다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性理學과 함께 전래되었던 「家禮」가 양반계층에 보급되고 그 시행이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되는 시기가 16세기였음은 家禮의 시행²⁾이 班家의 형식 변화에 하나의 계기가 되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 시기에 있어서의 班家는 단순한 일상생활 만을 위한 장소가 아닌 冠婚喪祭禮의 실천적 공간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家禮의 시행이 일반화 되게 되는 17세기 이후에는 冠婚喪祭 등의 儀禮가 행하여 질 수 있는 형식으로 班家가 造營되었던 것이며, 그러한 형식이 바로 조선시대의 典型의 班家의 形式인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시대의 班家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16세기의 家禮의 보급과 그 시행과정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선 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6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班家의 典型의 틀이 형성되고 기준의 형식이 변화하여 조선 후기의 典型의 班家로 정착하여 가는 과정을 家禮의 시행과정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家禮가 보급되고 시행됨으로써 班家의 典型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게 되는지를 사당, 안채, 사랑채의 변화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선시대의 班家가 儒敎의 문화의 틀속에서 만들어졌던 산물이었음을 밝혀보고자 한다.

2. 家禮의 보급 및 시행과 16세기의 변화

2-1. 15세기 家禮의 보급과 시행

「家禮」는 중국 南宋時代(1127-1279) 士大夫家の 표준적 冠婚喪祭禮 節次와 法式을 규정한 책으로서 일반적으로 중국 고전 禮書에 대한 재해석을 바탕으로 性理學의 집대성자였던 朱熹(1130-1200)에 의하여 저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家禮」가 언제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는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恭讓王 2년(1390) 이미 「家禮」를 표준으로 하는 士大夫家

2) 「家禮」는 朱子에 의하여 저술된 書籍을 의미하고 있으며, 家禮는 「家禮」에서의 구체적인 내용인 冠婚喪祭를 의미하는 것으로 용어를 구분하였다.

祭儀를 공포하였던 사실³⁾로 보아 高麗末에 性理學과 더불어 전해졌던 것으로 여겨진다.

排佛崇儒를 내세우고 性理學의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던 조선왕조는 「家禮」에 의한 禮制의 시행에 더욱 적극적이었다. 太祖(1392-1399)는 即位敎書 제 4조에서 '冠婚喪祭는 나라의 중요한 規範이니, 바라건대 禮曹는 經典을 자세히 연구하고古今의 時勢를 참작하여 분명한 표준을 결정 제시함으로써 人倫을 두텁게 하고 風俗을 바로 잡으라'고 하여 士大夫 및 庶民의 습속을 儒敎經典에 의거해서 고치고 규제하겠다는 기본원칙을 천명하였다.⁴⁾ 이어 太宗代(1401-1419)에는 보다 직접적으로 「家禮」를 보급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初任官吏에게 일률적으로 「家禮」시험을 부과하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7品 이하 既入仕官吏에게도 시험을 보여 「家禮」讀習을 의무화하였다.⁵⁾ 이에 따라 家禮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平壤府에서 150부를 인쇄하여 중앙의 각 官司에 배포하였다.⁶⁾ 또한 五部學堂에서 成均館의 下齋生으로 올라갈 때 치르는 升補試의 시험과목에 「孝經」·「小學」·「四書」와 함께 「家禮」를 포함시켰다.⁷⁾

이와 같이 국초부터 王室에 의하여 「家禮」의 시행이 강조되고 있었지만 그러한 노력이 통일신라에서 고려말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을 통하여 형성되어온 佛教의 生活習俗을 쉽게 변화시킬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行禮方式이 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데는 정책적 뒷받침이 있다 고해도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마련이며, 「家禮」에 의한 冠婚喪祭禮의 조선사회 정착도 예외는 아니었다. 따라서 家禮의 시행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중요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家禮의 시행에 있어 가장 먼저 강력하게 추진되었던 것은 祭禮에서의 家廟制였다. 太祖 원년

3) 「高麗史」 卷17, 禮5 大夫士庶人祭禮

4) 「太祖實錄」 원년 7월 丁未條

5) 「太宗實錄」 3년 6월 乙卯條

6) 「太宗實錄」 3년 8월 甲戌條

7) 「太宗實錄」 4년 8월 乙丑條

(1392) 9월 都評議使司 裴克廉과 趙浚 등은 公卿으로부터 下士에 이르기까지 모두 家廟를 세워先代를 제사하고 庶人은 寢에서 제사지내고 그밖의 다른 淫祀는 모두 금지할 것을 상언하였다.⁸⁾ 또한 太宗 원년(1401)에는 「家禮」에 의한 儀禮의 시행에 강제성을 가하여 따르지 않는 자는 과직하고자 하였다.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초의 家廟制 시행은 제대로 되지 않아 太宗代에는 家廟를 세운 집은 백에 한들도 없고¹⁰⁾, 士大夫들은 집을 크게 지으면서도 家廟는 세우지 않았다고 하였다.¹¹⁾ 그리하여 世宗代(1419-1450)에는 규정을 완화하고¹²⁾, 동시에 당시 家廟制의 시행을 저해하였던 巫俗의 제사를 단속하기 위하여 8條의 淫祀禁令을 공포하여 家廟制의 확대에 노력하였다.¹³⁾ 이러한 노력으로 15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京中の 士大夫계층에서는 家廟의 건립이 보편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成宗 12년(1481) 宮闈에 인접한 199채의 가옥을 철거함에 있어서 家廟가 31동 포함되어 있는데¹⁴⁾, 家廟의 설립이 士大夫에 국한되어 있었고 士大夫중에서도 宗子만이 家廟설립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면 결코 작은 수가 아닌 것이다.

家廟制 다음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을 장려하였던 사항은 葬禮였으며, 그 중에서도 三年喪의 준행문제였다. 이미 高麗末에 明律에 의한 葬服制가 채용되어 법제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 절차와 내용이 복잡하여 실제로 많은 관리들은 관행에 따라 百日만에 葬服을 벗는 것이 일반적이었다.¹⁵⁾ 이에 조선초기의 집권사대부들은 三年喪

의 실천과 배치되는 행위들을 금지하고 佛教의 영향 속에서 행하여지던 葬葬禮의 풍속을 「家禮」에 따르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우선 太祖 4년(1395) 司憲府는 상소문을 통하여 三年喪 준행의무를 전직관리들에게도 확대하고 三日葬과 火葬을 금하며, 古禮에 따라 大夫는 三月葬士는 蹤月葬으로 葯禮를 치르도록 건의하였다.¹⁶⁾ 이 건의는 당장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으나 太宗 17년(1417)에 이르러 법령으로 확정되었다.¹⁷⁾ 이러한 노력의 결과 世宗 14년(1432) 무렵에는 「家禮」에 따라 葯葬禮를 행하는 士大夫가 30-40%에 이르게 되었고¹⁸⁾, 成宗末에는 士大夫 계층에서 三年喪이 상당한 정도로 행하여져 都承旨 鄭敬祖 등이 士大夫家의 葯制는 모두 「家禮」를 따르며 佛敎式은 거의 행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가 되었다.¹⁹⁾

한편, 祭禮 및 葯禮와 더불어 「家禮」의 내용을 구성하는 婚禮와 冠禮는 상대적으로 시행이 덜 되었던 부분이었다. 婚禮의 경우 太宗 4년(1404) 司憲府의 상소를 통하여 士大夫家의 婚姻은 모두 「家禮」에 따르도록 하고 위반자는 법으로 다스릴 것을 건의²⁰⁾하여 시행의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당시의 婚俗은 여자의 집에서 婚禮를 행하고 자식이 태어나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사위가 妻家에 머무는 풍속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신랑이 신부집에서 신부를 맞아다가 媳家에서 婚禮를 행하고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親迎禮는 생소한 것이었을 뿐더러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었으므로 王室에서의 솔선수범²¹⁾에도 불구하고 「家禮」에 따른 婚禮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²²⁾

冠禮의 경우도 太宗 4년 議政府에서 「家禮」에

8) 「太祖實錄」 원년 9월 壬寅條

9) 「太宗實錄」 원년 12월 己未條

10) 「太宗實錄」 6년 6월 丁卯條

11) 「太宗實錄」 13년 5월 戊子條

12) 「家禮」에 규정된 家廟의 규모는 3칸이었지만 가난하여 노비가 없고 가옥규모가 10칸 이하인 사람과 집터가 3-4負 이하인 사람은 1칸짜리 祭室만 세우도록 하고 본래 士族이 아닌 사람은 당분간 正寢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여 그 규정을 완화하였다.
(「世宗實錄」 14년 2월 辛卯條)

13) 「世宗實錄」 25년 8월 丁未條

14) 「成宗實錄」 12년 정월 甲午條

15) 「太祖實錄」 7년 2월 戊寅條

16) 「太祖實錄」 4년 7월 庚寅條

17) 「太宗實錄」 17년 6월 丙戌條

18) 「世宗實錄」 14년 3월 甲子條

19) 「成宗實錄」 23년 11월 庚寅條

20) 「太宗實錄」 4년 8월 己丑條

21) 「太宗實錄」 7년 7월 甲子條

「世宗實錄」 17년 3월 丙子條

따라 시행할 것을 상소하였으나²³⁾ 王室의 경우에 있어서도 慎宗의 冠禮에 관한 기록²⁴⁾만이 있을 뿐이고, 文宗 원년(1451) 禮制가 다 완비되었으나 단지 冠禮만이 행하여지지 않고 있다²⁵⁾는 것으로 보아 士大夫家에서도 제대로 행하여지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 말 性理學과 함께 전래된 家禮는 15세기에 이미 國家王室의 주도하에 京中의 士大夫家에 우선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여 祭禮(家廟制)와 葬禮(三年喪)는 어느 정도 일반화되고 있었으나 婚禮와 冠禮는 거의 행하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祭禮와 葬禮의 경우도 「家禮」의 내용과 절차에 맞도록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다.

「家禮」에 의하면 天子에서 일반庶人에 이르기 까지 奉祭祀를 四代로 규정하여 高祖妣까지의 祭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15세기 祭禮의 시행에 있어서는 신분에 따라 奉祭祀를 제한하여 6品 이상은 3代를, 7品 이하는 2代를, 그리고庶人은 부모에게만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이를 「經國大典」에 기록하였다.²⁶⁾ 또한 葬禮의 경우도 「家禮」에 따르자면 血脈의 親疎에 따라 服制를 달리하고 服을 입는 기간도 서로 다르며²⁷⁾, 그 절차와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다.²⁸⁾ 하지만 15세기의 葬禮의 시행에 있어서는 삼년동안의 服制만을

22) 太宗 7년 世子의 親迎(註21)을 피하기 위하여 당시 士大夫家에서는 연소한 처녀들을 모두 혼인시켜버리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世宗實錄」 12년 12월 戊子條)

23) 「太宗實錄」 4년 8월 甲午條

24) 「世祖實錄」 3년 11월 丁卯條

25) 「文宗實錄」 원년 11월 乙巳條

26) 「經國大典」 禮典 奉祀條

27) 혈연관계의 親疎에 따라 斷衰·齊衰·大功·小功·媯麻의 五服制가 있고 그 관계를 맺게 된 내용에 따라 正服·加服·義服·降服의 네 종류가 있으며, 그 親等 관계에 따른 3년·1년·9개월·5개월·3개월의 葬服기간이 있다. 이러한 服制의 범위에 따른다면 총 80여종의 葬服이 있는 것이며, 많게는 108종류의 葬服이 있게 된다.

강조하여 전반적인 「家禮」의 내용에 대한 이해에는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太宗 3년(1403) 司諫院의 時務條²⁹⁾에 의하면 갑작스레 葬을 당하면 經師³⁰⁾가 시키는대로 하고 있다고 하여 士大夫들조차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15세기에 있어서의 葬祭禮 시행은 형식적인 것으로서 「家禮」를 정확하게 따르고 있지는 못하였다. 「家禮」의 내용과 절차를 이해하고 이를 정확하게 따라 冠婚喪祭禮를 시행하는 것은 16세기의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겪은 후에야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2-2. 16세기의 변화와 家禮書의 刊行

15세기에 있어서 「家禮」에 의한 冠婚喪祭禮의 시행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내용의 이해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닌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전국적으로 행하여졌다가 보다는 京中의 士大夫家에 한하여 시행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6세기에 들어서는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있게 되어 「家禮」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시행할 수 있는, 또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다.

즉, 정치적으로는 15세기 말부터 正統性理學으로서의 朱子學을 습득하고 실천하는 주체로서 16세기 이후 조선 사회의 주도세력으로 성장하게 되는 士林의 등장과 낙향이 그러한 변화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15세기에 성립되었던 科田法의 폐지와 사상적인 측면에 있어서 禮學의 발달 역시 그러한 변화의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28) 「家禮」에 따르면 葬禮의 절차는 初終에서부터 吉祭가 시작되는 小祥까지 18개의 단계로 구분되며, 大祥과 禮祭·附祭를 포함하면 무려 21단계가 된다.

29) 「太宗實錄」 3년 4월 庚戌條

30) 經師는 그 당시 葬葬禮을 치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사람들로서 上經師 副經師 前上經師 經師 外方官經師 등의 등급이 있었으며 (「世宗實錄」 6년 8월 庚戌條), 「家禮」와는 다른 陰陽五行이나 風水地理의 인성을 다진 葬書들을 개인마다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太宗實錄」 18년 3월 甲戌條)

15세기말 成宗의 인재 등용에 힘입어 中央政界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던 士林은 燕山君代(1495-1506)에 이르러 戊午土禍(1498)와 甲子土禍(1504)에 의한 정치적 숙청을 통하여 중앙에서의 세력이 일시 약화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妻鄉이나 外鄉으로 낙향하여 학문적인 업적을 쌓으며 후진을 배출하고, 鄉村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결과적으로는 中央과 鄉村에서 모두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하고 있었다. 그 결과 16세기초 中宗代(1506-1545)에 重用되었던 士林들이 己卯土禍(1519)를 통하여 또 한차례의 정치적 숙청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6세기 중기 이후 宣祖代(1568-1609)에 이르러서는 대체로 政界를 주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士林들의 鄉村社會로의 낙향과 中央에서의 세력확대는 家禮의 시행에 적극적이었던 士林들에 의하여 京中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家禮가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15세기에 성립되었던 科田法이 폐지되고 농업기술의 발달과 토지개간 등을 통하여 士大夫 계층에 의한 土地의 兼併이 확산되고 대토지소유제가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勳舊세력을 비판하고 개혁을 주장하던 士林들도 대부분은 鄉村에 경제적인 기반을 둔 地主로서 鄉村社會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해갔다.³¹⁾ 「家禮」에 의한 冠婚喪祭의 시행에는 상당한 정도의 經濟力이 전제되어야 하였다. 일부 士大夫의 경우에는 가난하여 三年喪을 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국가에서의 보조가 따르기도 하였던 것이다.³²⁾ 조선후기에 상인이나 농민들도 家禮를 행하게 되는 것은 유교적 교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력의 상승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16세기에는 士大夫계층에서 경제적인 부의 축적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士大夫계층에서의

家禮 시행이 15세기에 비하여 더욱 용이해졌다고 여겨진다.³³⁾

사상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는 앞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士林들의 세력확대와 관련되어 볼 수 있다. 즉, 試賦와 詞章에 능하였던 勳舊세력들과는 다르게 이들 士林들은 性理學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여 家禮의 시행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수차례의 土禍를 겪은 후 이들의 사상적인 기초를 이루고 있던 실천적 性理學은 觀念論의 理氣論 중심으로 변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觀念論化의 결과 16세기 중기 이후에는 理氣論에 대한 논쟁이 싹트게 되었고, 16세기 말 이후에는 士林 세력간의 黨爭을 발생시키고 심화시키는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기도 하였다.³⁴⁾ 반면에 禮學이 발달되어 「家禮」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뿐만아니라 학문적인 성과물로서 家禮書가 간행되기 시작하여 士大夫家에서는 물론이고 鄉村사회에까지 家禮가 보급되고 시행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상에서와 같은 諸 변화의 결과 16세기에 들어서는 「家禮」에 의한 祭禮와 喪禮의 시행이 15세기의 형식적인 것에서 벗어나 「家禮」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으며, 京中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柳希春에 의하여 「眉巖日記草」에 기록된 客廳의 신축기록과 祠堂의 건립계획³⁵⁾은 16세기 중반의 士林의 落鄉과 家禮의 전국적인 시행에 관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喪禮의 경우 燕山君때의 短喪令에 의하여 15세기에 있었던 유교적인 방식에 의한 喪葬禮의 노

33) 高英津, '15-16세기 朱子家禮의 施行과 그 意義', 『韓國史論』 21, 1989, pp. 101-103

34) 강만길, 앞논문, pp. 228-229

35) 「眉巖日記草」는 士林의 일원으로 乙巳土禍에서 피해를 입었던 저자 柳希春이 宣祖 즉위년(1567)부터 10년(1577) 까지 쓴 친필일기로서 그 내용 중에는 全羅南道 潘陽에 있는 자신의 집에 客廳을 신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이호열의 논문(‘16세기말 士大夫家 客廳 造營事例 研究’, 『建築歷史研究』 1-2, 1992) 참조할 것.

31) 이수건, 「嶺南士林派의 形成」, 영남대출판부, 1990, pp. 149-230 참조

32) 「成宗實錄」 14년 6월 丁卯條
「成宗實錄」 19년 10월 丁未條

력이 좌절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中宗反正(1506) 이후 三年喪 회복령을 내리고 무너졌던 禮制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오히려 불교식의 葬葬禮를 拂拭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中宗 13년(1518)에는 전세대에서 행하여지지 않고 있었던 婚禮에서의 親迎禮가 土大夫家에서도 행하여지기 시작하였고³⁶⁾, 변형된 형식으로서의 半親迎禮³⁷⁾가 보편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었다. 그러나 冠禮는 그 시행이 주장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행하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³⁸⁾

한편, 16세기 중기 이후 「家禮」에 근본을 두고 土林들에 의하여 간행되기 시작하는 家禮書는 처음에는 家門의 生活規範書로서 祭禮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祭禮를 통한 家門의 통합을 위하여 간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家禮書로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李諺迪의 「奉先雜儀」(1550)를 들 수 있다. 다음 단계에는 葬葬禮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일관된 체계를 갖춘 家禮書가 간행되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葬葬禮書로는 申義慶·金長生의 「喪禮備要」(1584)와 金誠一의 「喪禮考證」(1581)을 들 수 있다. 冠婚喪祭禮를 모두 포함하는 체계적인 家禮書는 16세기 말, 17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등장하게 된다. 禮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어 감에 따라 家禮의 종합적인 고찰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冠婚喪祭禮를 모두 포함하는 四禮書가 성립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四禮書로서 대표적인 것은 宋翼弼의 「家禮註說」(1590년대)과 申義慶·金長生의 「家禮輯覽」(1599) 등이 있다.

이들 家禮書는 16세기 중기 이후 가문의 생활 규범서인 祭禮書로부터 葬葬禮書로 발전하였고, 16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종합적인 冠婚喪祭의 四禮書로 발전하여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家禮書의 단계적인 간행은 앞서 살펴보았던 家禮의 시행과 순차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土林을 포함한 양반들의 「家禮」에의 관심과 이해과정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2-3. 사회제도의 변화

土林을 포함한 양반들의 「家禮」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은 朱子家禮와 관련된 사회제도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였으며, 나아가 전체적인 사회구조의 변동을 초래하였다.³⁹⁾ 특히, 家禮의 시행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宗子法⁴⁰⁾의 수용은 그와 관련되어 있던 奉祀制를 비롯하여 相續制冢養子制冢婦法 등의 제도에 변화를 가져왔다.

「經國大典」에 기록된 바와 같이 15세기의 奉祀制는 三代奉祀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16세기에 들어 家禮의 시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일반화됨에 따라서 「家禮」에 따라 四代奉祀를 하는 것으로 점차 변하여갔으며, 相續制 역시 子女均分相續으로부터 宗子法에 따라 嫡長子를 優待하는 嫡長子優待相續으로 변하여 갔다. 後嗣가 없는 경우 祭祀權과 相續權이 누구에게 가는가 하는 養子制도 조선초기에는 嫡庶차별의 바탕위에 血脈의 親疎에 따라 祭祀를 상속시킨다는 관념이 우세하여 立後子를 세우되 그 이후라도 親生子가 태어나면 親生子에게 祭祀를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入後子는 家產만 均分하였다. 하지만 16세기에 들어서는 親生子보다는 入後子를 우선하는 경향이 土林들간에 우세하였고, 그러한 원칙이 17세기의 「續大典」에 실리게 되었다.⁴¹⁾ 또한 養子制와 관련하여 後嗣 없이 죽은 長子의

39) 고영진, 앞논문, 1989, p. 152

40) 宋나라의 諸儒들이 封建制에 기초하고 있던 古宗法과 구별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붙인 것이 바로 宗子法이다. 諸侯의 자손들이 중심이 되어 별도의 大宗을 세우는 古宗法과는 달리 王子와 功臣을 始祖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家禮」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으로 家禮의 시행에 있어서도 중요한 規範으로 작용하고 있다. (박연호, '조선전기 土大夫禮의 변화양상', '청계사학' 7, 1990. 참조)

36) 「五洲衍文長箋散稿」 권10 覓寢宴辨證說, 명문당영인본 上, p. 337

37) 신랑이 신부집에 도착하는 날 저녁에 交拜禮와 合巹禮를 행하고 初夜를 치른 뒤, 다음날 시부모를 拜謁하는 방식이다.

38) 「中宗實錄」 11년 11월 乙未條

妻가 여생동안 祖上의 祭祀를 계속 주관할 수 있는 家婦法이 오래전부터 존중되어 왔으나 근본적으로는 宗子法에 저촉되는 것이었으므로 家禮의 시행이 일반화되는 16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변화의 계기가 주어지게 된다.

3. 班家의 形式變化

土林을 포함한 兩班들의 거주공간으로서의 班家 역시 前章에서 살펴보았던 16세기의 사회제도 전반에 걸친 변화와 무관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주택으로서의 班家는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실천을 강조하였던 家禮의 實踐空間이었기 때문인 것이다. 班家에서의 변화는 班家를 구성하는 주 구성요소로서의 사당, 안채, 사랑채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3-1. 사당(家廟)

太祖의 卽位敎書에서도 알 수 있듯이 家禮는 질서의 확립과 불교적인 습속의 변화를 목적으로 국가에 의하여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⁴²⁾, 그中最 먼저 강력하게 시행되었던 것은 士大夫들의 家廟설립이었다. 家廟의 설립이 이처럼 家禮 시행의 초기 단계에 강조되는 것은 家廟 자체가 조상의 神位를 모시는 장소로서 상징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번의 건립으로 항구적인 行禮의 거점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⁴³⁾ 또한, 「家禮」의 경우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圖說로서의 「家廟之圖」와 「祠堂之圖」이고, 내용에 있어서도 通禮의 祠堂에 관한 항목이 앞에 서술되어 있다(그림 1.).

이것은 家廟, 즉 祠堂이 冠婚喪祭의 四禮를 관통하는 중심축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祭禮는 물론이고 喪禮의 경우에도 돌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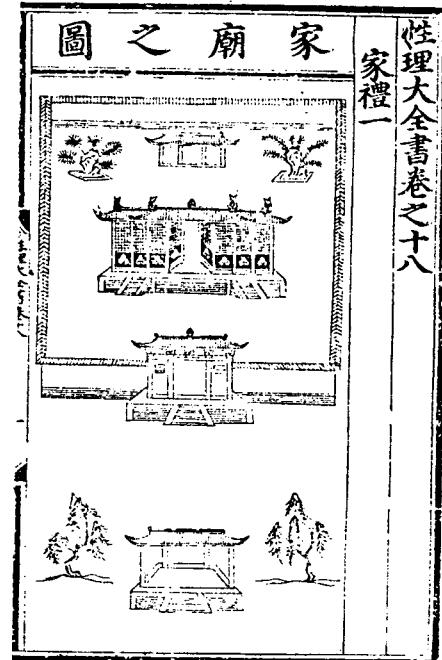


그림 1. 「家廟之圖」(性理大典)

신 분에 대해서 祠堂에 告하는 절차가 있고 發輞時에는 祠堂 앞에서 奠祭를 드리게 되며, 賄祭와 小祥 大祥 등에 祠堂이 行禮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婚禮와 冠禮에 있어서도 冠禮가 시작되기 전과 끝난 후에, 또 酔禮가 이루어지기 전主人과 함께 祠堂에 告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祠堂은 冠婚喪祭禮의 行禮節次에 있어서 상징적인 구심점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祠堂, 즉 家廟의 설립은 家禮의 시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15세기부터 국가 왕실에 의하여 家廟制가 강조되고 法制的으로 시행을 강요함으로써⁴⁴⁾ 15세기에도 일부 士大夫家에는 家廟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오랜 기간 民間信仰의 유행으로 혹은 佛敎式으로 전해오던 禮의 형식이 단시일 내에 「家

41) 「大典會通」 卷3, 禮典 奉祀條

42) 註4) 참조

43) 박연호, 앞글, p. 175

고영진, 앞글, p. 86

44) 「士大夫는 家廟를 세워 祭祀를 받들고, 庶人은 正寢에서 祭祀를 지내게 한다」는 원칙은 이미 高麗 恭壤王대에 趙浚에 의하여 주장되었던 바로서 太祖代에 「經濟六典」에 별처조항까지 함께 수록되었다. (박연호, 앞글, p176)

『禮』의 형식으로 변하기는 힘든 일이었다. 또한 宗法이라든가 「家禮」에 나오는 세부적인 절차에 대한 이해가 따르지 않는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家廟의 설립은 일반민들에게는 물론이고 士大夫들에게조차도 일반화되기 힘들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문물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지는⁴⁵⁾ 成宗代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京中에 家廟설립이 일반화되었으며, 그것이 전국적으로 士大夫家에 보편적인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것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16세기에 들어서이다. 이와 같이 16세기 이후 家廟의 설립이 일반화됨으로서 祠堂은 班家의 한 구성요소로서 자리잡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祠堂의 형식에 있어서는 奉祭祀를 4대로 할 것인가 혹은 3대로 할 것인가에 따라 祠堂 내에 4개의 爰室을 설치하거나 혹은 3개를 설치하는 두가지의 형식이 있을 수 있었다. 즉, 「經國大典」에 규정된 바⁴⁶⁾와 같이 한다면 士大夫家의 祠堂에는 3개의 爰室을 갖추어야 하고(그림 2.), 「家禮」에 따른다면 4개의 爰室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었다(그림 3.). 그렇지만 신분에 따른 奉祭祀의 제한에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고⁴⁷⁾, 16세기에 들어서는 전반적으로 「家禮」를 존중하는 경향이 커짐에 따라 四代奉祀가 일반적이 되었으며, 祠堂의 형식도 4개의 爰室을 갖추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

3-2. 안채(正寢)

家禮의 行禮에 있어서 祠堂이 상징적인 구심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실질적인 冠婚喪祭禮의 行禮空間은 正寢이라고 할 수 있다. 즉, 祭禮의 경우에 있어서 祠堂祭와 廟祭를 제외한 忌祭와

45) 「經國大典」과 「國朝五禮儀」의 완성은 초기의 문물제의 정비를 대표하는 사실이다.

46) 「經國大典」 禮典 奉祀條

47)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父가 6品 이상이면 3대로 제사 지낼 수 있었지만 父가 죽고 그 아들이 職品이 없으면 父母만 제사 지내고 曾祖과 祖의 神主는 철거해야 했다. 또 그러다가 아들이 6品을 除授받으면 다시 神主를 만드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世宗實錄」 10년 9월 癸亥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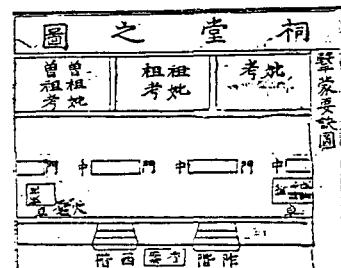


그림 2. 三代奉祀의 祠堂(擊蒙要訣)



그림 3. 四代奉祀의 祠堂(性理大典)

時祭 등의 家祭⁴⁸⁾에서 실제로 제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正寢에서의 堂이다. 또한 葬禮에 있어서도 初終에서 發引 전까지의 行禮空間은 正寢에서의 室과 堂이며, 婚禮의 경우도 신랑집의 正寢에서 交拜禮가 행하여지고 新房 역시 正寢의 室에 차려지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行禮의 구심점으로서 祠堂이 건립되는 것과 함께 行禮의 主空間으로서의 正寢, 즉 安채 역시 家禮의 行禮에 적합한 形式으로의 변화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家禮」를 비롯하여 16세기 후반에 간행되기 시작하였던 家禮書에는 祠堂의 경우와는 달리 正寢의 형식을 圖說로 독립시켜 설명하고 있지 않다. 다만 正寢에서의 行禮가 이루어지는 祭禮와 葬禮, 婚禮 등

48) 祭禮는 行禮의 장소가 어느 곳인가에 따라 크게 祠堂祭와 廟祭, 家祭 등으로 나뉘어진다. 여기서는 安채의 변화과정과 관련하여 正寢에서의 家祭를 중심으로 다루기로 한다.

에 관한 圖說을 통하여 正寢의 형식을 살펴볼 수 있다. 堂⁴⁹⁾을 전면에 두고 그 후면으로 동쪽에는 房이, 서쪽에는 室이 위치한 간단한 공간구성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4.). 이러한 형식은 16세기 중기 이후 진행되었던 일부 家禮書의 圖說에 표현된 三代의 宮室制度에서 堂의 좌우에 廂과 夾室이 없는 형식과 같은 것⁵⁰⁾으로 家禮書의 正寢 형식이 宮室制度에서 유래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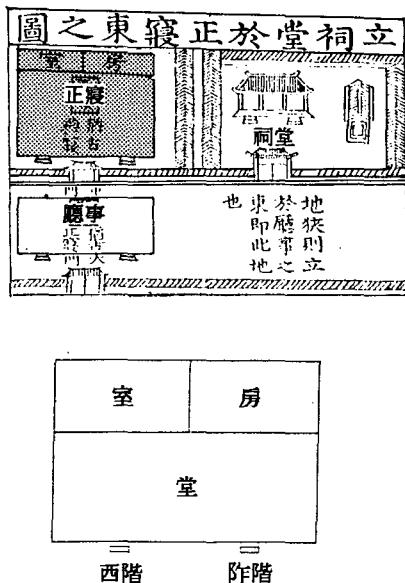


그림 4. 家禮書에서의 正寢구조

- 49) 「說文解字」에 '옛날에 堂이 있었는데, 전반부의 비어 있는 부분을 堂이라 하고 후반부의 채워진 부분을 室이라 한다'고 하여 堂의 개방적인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漢和大辭典」에는 '일반적으로 堂은 흙을 높이 쌓은 후에 건물을 짓고 그 좌우의 벽을 序라 할 때, 序 사이 중앙 남쪽으로 평탄하고 넓은 공간을 의미한다'고 하여 堂이 개방적인 공간임을 시사하고 있다.
- 50) 「爾雅·釋宮」에 '동서에 廂이 있는 室이면 廟라 하고 없으면 寢이라 한다'고 하여 廂의 유무가 廟과 寢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그註에 '廂은 곧 夾室과 그 前堂을 말한다'고 하여 廂이 堂 좌우의 부속공간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班家의 안체에서는 家禮書에서의 正寢의 형식을 따르고 있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이는 家禮書에서의 圖說은 원래 중국의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을뿐더러 家禮만의 行禮를 위한 이상적인 공간을 도식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비일상적인 儀禮로서의 家禮만이 班家의 형식을 규정할 수는 없으며, 실생활 공간으로서의 안체는 독립적인 성격이 강한 祠堂과는 다르게 생활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家禮書에서의 형식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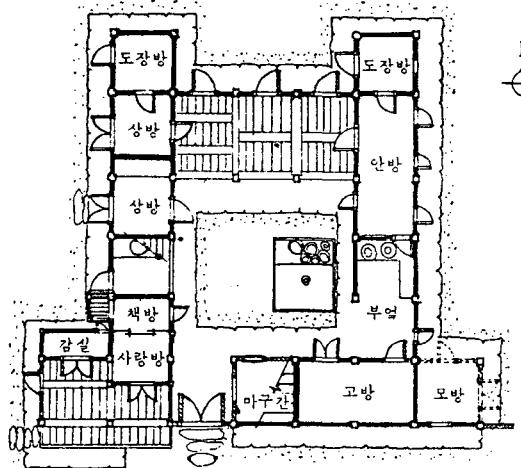
다만 16세기를 전후하여 家禮의 시행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시기에 기존의 안체형식과는 다른 형식의 안체가 새로이 만들어졌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경주의 獨樂堂(16세기초)을 비롯하여 예천의 權氏 宗家(16세기말), 禮安 李氏 宗家(16세기말), 양동마을의 無忝堂(16세기초) 및 樂善堂(16세기중기), 하회마을의 養眞堂(16세기말)과 忠孝堂(16세기말) 등이 그러한 안체의 구체적인 실례가 된다.

이들 안체의 형식은 기존의 안체 형식이 2칸 혹은 3칸의 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방을 비롯한 부속공간이 접속되어 좌우대칭적인 공간구성을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마루와 안방이 각각 2칸정도의 동일한 규모로 병렬되어 안체의 중심부를 형성한 후 부속공간이 좌우에 접속되는 좌우비대칭적인 형식을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⁵¹⁾에서와는 다르게 전자를 '대칭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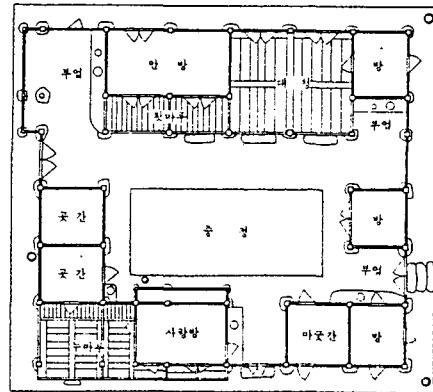
- 51) 기존의 연구에서 안체의 형식을 구분한 것으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정인국과 최일에 의한 분류가 있다.

정인국의 경우 「韓國建築樣式論」(일지사, 1985)에서 부엌이 안방의 전면에 위치한 형식을 宮闈의 寢殿에서 유래한 형식으로 보고 주로 경기지방에 분포하고 있으므로 '경기형'으로, 부엌이 안방의 측면에 위치한 형식을 민가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고 '민가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崔壹의 경우에는 「朝鮮中期 이후 南部地方中上流住居에 관한 연구」(서울대 박사논문, 1989)에서 다양한 형식의 주택을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의 하나로서 室構成方式에 의한 분류로 '꺽임형'과 '일렬형'을 구분하고 있다.



勿替堂 (대청형)



禮安 李氏 宗家 (비대청형)

그림 5. 대청형 안채와 비대청형 안채

안채로, 후자를 ‘비대청형’ 안채로 구분하였다(그림 5.).

이러한 비대청형 안채가 家禮의 시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비대청형 안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 가 家禮의 시행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일반화되는 시기인 16세기와 일치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현존하는 안채의 실례를 통하여 볼 때도 17세기를 지나 18·19세기에 이르러서 비대청형의 안채가 대청형의 안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⁵²⁾ 역시 家禮 시행과의 관련을 설명해주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이 비대청형의 안채가 숫자으로 증가하는 것이 家禮의 시행 만이 아닌 조선후기의 사회 경제적인 변화, 즉 농업경제의 발달에 의한 부의 축적과 그에 따른 양반층의 급격한 증가 등과도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하지만 「家禮」에 따른 冠婚喪

祭의 시행이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⁵³⁾을 고려하면 조선후기로 갈수록 비대청형 안채가 증가하는 것은 家禮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속공간을 제외한 비대청형 안채의 중심부가 家禮書의 正寢과 공간구조의 측면에서 유사하다는 점도 비대청형 안채와 家禮와의 관계를 말하여준다(그림 4.). 에서 볼 수 있듯이 家禮書의 正寢 공간은 堂을 전면에 두고 후면에는 房과 室이 위치한다. 그러나 行禮의 과정에 있어서는 동쪽의 房은 사용되지 않고, 전면의 堂과 서쪽의 室만이 主行禮의 공간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家禮의 行禮에 적합하도록 안채를 造營함에 있어서는 冠婚喪祭禮의 行禮空間으로서 正寢에서의 堂과 室을 공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行禮의 중심공간인 堂을 퇴를 포함한 안대청으로 확대하고, 正寢에서의 室은 안방으로 공간화하여 안채의 중심부를 구성함으로써 기존의 대청형 안채와는 다른 비대청형 안채를 형성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正寢에서의 房은 行禮의 節次에는 필요치 않은 이유로 인하여 실제의 안채에서는 건년방으

52) 최일의 분석(전계논문, p. 135)에 의하면 일렬형과 꺽임형의 수가 1700년대 이전에는 19/22에서 1700-1800년대에는 21/30으로, 그리고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143/82로 일렬형 안채가 점차 많아지는 추세를 보여준다.

53) 註 33) 참조

로 형식화하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비대칭형 안채의 등장이 家禮의 보급 및 시행과 시기적으로 일치하고, 家禮書의 正寢과 공간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에서 비대칭형 안채가 家禮의 시행과 관계있음이 추정 가능하다. 하지만 家禮 시행의 초기단계부터 비대칭형의 안채가 造營되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祭禮의 시행에 있어서는 家廟와 더불어 正寢에서의 堂이 가장 중요한 공간이었으므로 2칸 혹은 3칸의 마루가 안채의 중심부를 구성하는 기존의 대칭형 안채에서도 祭禮의 行禮가 가능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대칭형 안채에서 비대칭형 안채로의 이행과정은 祭禮 이후 시행이 강조되는 葬禮와 婚禮의 시행과정과 좀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家禮」에 보이는 葬禮와 婚禮의 行禮節次에서 堂과 더불어 室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대칭형 안채에서의 行禮가 부적합하게 되고 비대칭형 안채가 필요하게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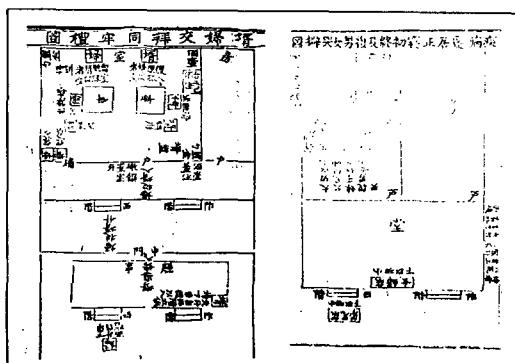


그림 6. 婚禮와 葬禮에서의 室의 사용

3-3. 사랑채

사랑채는 조선시대의 典型的인 班家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로서 여성들의 점유공간으로 인식되었던 안채와는 달리 바깥주인이 거주하면서 손님을 접대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던 남성들의 점유공간이었다. 또 규모나 형식에 있어서는 别棟으로 또는 안채에 접속되어 크게 지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큰 규모의

사랑채가 班家에 있어서 典型的인 틀로서 자리잡게 되는 것은 앞서 2장에서 살펴보았던 16세기의 사회제도 변화의 결과 家父長權이 확대되는 것과 더불어 家禮의 보급과 시행에 의한 班家의 형식 변화를 겪은 이후의 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문헌을 통하여 조선초기의 班家에 있어서 사랑채에 관한 것을 살펴보면 '中門에 가로 놓여 손님을 접대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하였으며⁵⁴⁾, 世宗 31년(1449) 家舍規制의 내용에는 사랑의 규모에 관한 기록⁵⁵⁾이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조선초기에 있어서 사랑의 용도와 규모를 살펴보면 사용부재나 단위공간이 正寢에 비하여 작고 오히려 行廊의 규모와 동일하고⁵⁶⁾ 특별한 용도가 없는 부속공간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조선후기의 기록인 「雅言覺非」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정약용은 '斜廊이란 堂의 측면에 있는 橫廡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를 잘못 번역하여 바깥채인 廳事의 室로서 斜廊이라 한다'고 하였다.⁵⁷⁾ 이 내용은 廳事⁵⁸⁾와 斜廊은 분명히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 사랑은 正寢에 연접한 공간을 지칭하는 것이고, 廳

54) 「松南雜識」, 韓國學古辭典叢書, 亞細亞文化社影印, p. 969.

'御天歌註 中門橫廡待客之所 俗謂斜廊……'

(이호열, '朝鮮前期 住宅史 研究', 영남대 박사논문, 1991, p. 71에서 재인용)

55) 주나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987, pp. 54~55

56) 이호열의 분석(전개논문, p. 61)에 의하면 조선초기 世宗代의 家舍規制에 나타난 班家에서의 斜廊의 단위 면적과 기둥의 높이 등은 行廊과 동일하였으며, 다만 大君의 경우에 있어서만 전면의 폭이 0.5尺 가량 큰 것으로 나타난다.

57) 정약용, 「雅言覺非」, 권3, 斜廊條

'斜廊者 堂側之橫廡東人誤譯 今以外舍廳事之室 謂之斜廊……'

58) 家禮書에는 廳事가 正寢의 전면으로 中門 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家禮」의 내용으로 보아 葬禮와 冠禮時에 사용되는 장소로 되어 있다. 또한 「家禮輯覽」의 通禮에는 退溪의 말을 인용하여 '대문 안쪽의 작은 小廳인 斜廊을 말한다'고 하였다.

事는 바깥채를 지칭하는 것이었으나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廳事를 사랑으로 잘못 이해함으로써 용어가 혼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조선초기에는 중문간에 부속되어 손님을 접대하는 부속공간으로서 작은 규모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랑이 현존하는 대부분의 사랑채에서처럼 큰 규모로 확대되는 것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家禮의 보급과정과도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특히, 祭禮와 관련하여 四代奉祀가 일반화되어 가던 16세기에 있어서 宗家의 時祭⁵⁹⁾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參禮하게 되므로 이들을 접대할 큰 규모의 공간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기존의 작은 규모의 사랑을 증축하거나 別棟으로 독립시켜 신축하는 방법으로 사랑채의 공간적 확대를 기도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柳希春이 저술한 「眉巖日記草」에 나오는 客廳

의 신축공사⁶⁰⁾도 결국 안채에 연접하여 있었던 사랑을 공간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또한 현존하는 班家, 특히 宗家의 경우에 있어서도 기존의 작은 규모의 사랑채를 크게 증축하거나 別棟으로 크게 신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사랑채의 공간적 확대는 家禮와의 관련속에서도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현존하는 班家의 사랑채를 통해서도 增築과 新築에 의한 공간의 확대를 추정해볼 수 있다. 오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원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복원적 고찰이 앞서야 하겠으나 15세기에 지어진 孫東滿 가옥에서의 사랑채는 문헌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중문에 부속된 소규모의 공간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의 사랑채는 家禮가 전국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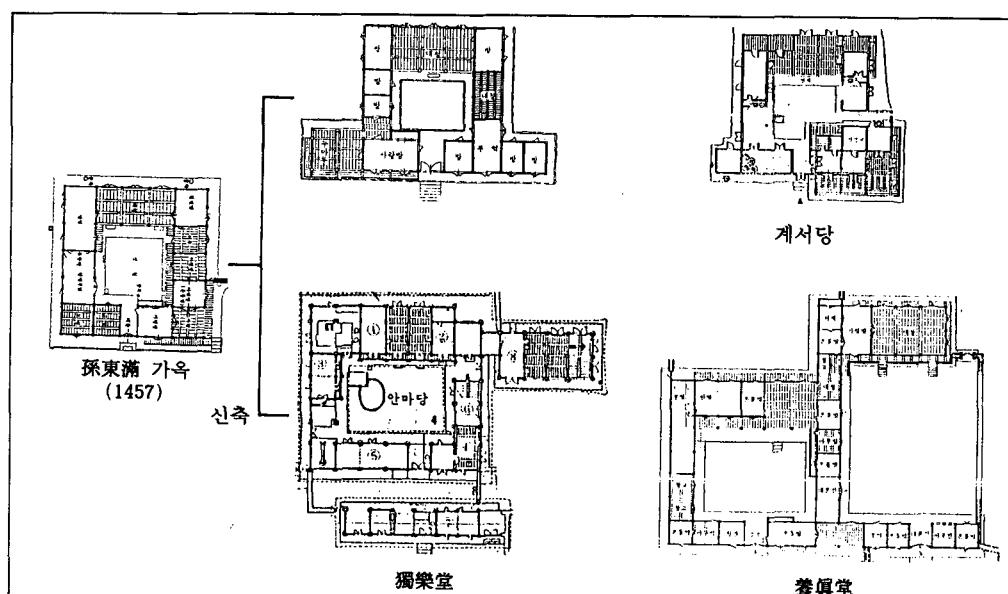


그림 7. 증축과 신축을 통한 사랑공간의 확대

59) 正寢에서 이루어지는 家祭의 한 종류로서 四時祭라 하여 네 계절의 중간달인 2월 5월 8월 11월에 '丁' 자나 '亥'자가 들어 있는 날을 택일하여 지내게 된다. 그날 돌아가신 분만을 대상으로 단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忌祭祀와는 다르게 四代奉祀를 하는 경우 四代의 神位를 모두 祠堂에서 正寢으로 모셔내어 지낸다. 따라서 그에 관계된 모든 친인척들이 모두 함

께 모이게 된다.

60) 註 34) 참조

宣祖 8년(1575)에 이루어진 客廳의 신축으로 明宗 원년(1546)의 안채와 宣祖 원년(1568)의 行廊 건립과 더불어 비로소 주택의 형식을 갖추게 되었음이 기록되어 있다.

로 보급되고 시행되는 16. 17세기에 들어와 觀稼亭(16세기초)과 溪西堂(17세기초)으로 이어지는 증축에 의하여 혹은 獨樂堂(16세기중기)과 養眞堂(16세기말) 등과 같은 신축을 통하여 공간적인 확대가 이루어지는 변화를 맞이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그림 7.).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소규모의 사랑이 신축된 사랑채와 함께 존속되고 있으므로 공간적인 확대의 경향을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다.

한편, 이상에서와 같은 사랑채의 공간적 확대와 더불어 이 시기에 祭禮와 喪禮의 主行禮空間이 기준의 안채로부터 사랑채로 대부분 轉移되어 가고 있음도 간파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다. 「家禮」에 따르면 家祭가 행하여지는 장소는 正寢이고, 正寢 중에서도 堂이 主行禮空間이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또한 喪禮의 경우에 있어서도 正寢에서의 堂이 行禮의 主空間이었다. 따라서 家禮의 시행초기에는 「家禮」에 의하여 실제의 班家에서도 안채가 忌祭로 대표되는 家祭의 主行禮空間이었을 것이고, 喪禮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안채에서 行禮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家禮」에 의한 冠婚喪祭의 行禮가 양반 사회에 일반화되기 시작하는 16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공간사용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안채에 있어서 家禮書에서의 堂의 역할을 하는 마루는 사랑에서와 마찬가지로 많은 인원이 參禮하는 時祭의 行禮에는 협소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眉巖日記草」의 내용에 안채의 堂이 협소하여 斜廊廳에서 祭祀를 모신다는 기록⁶¹⁾은 이러한 사실을 말하여주고 있다.

또한 性理學의 倫理規範이 양반사회에 점차 일반화되었던 것도 그러한 변화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즉, 남녀의 구별을 강조하는 内外思想이 조선사회에 일반화되어⁶²⁾ 감에 따라 주택에

61) 「眉巖日記草」丙子年 2월 11일

'……晴 鶴鳴而起 梳洗衣冠 敬書祝文 賀明 祭先夫人 兼祭先公于斜廊廳 以內窄而就寬堂也……'

62) 이순구, 「朝鮮初期 内外法의 成立과 展開」, 「清溪史學」 3, 1986 참조

서의 남녀공간의 구분⁶³⁾ 역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祭禮와 喪禮에 있어서 여성의 공간으로 인식되었던 안채가 主行禮空間으로 사용됨은 외부인의 안채로의 출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여성의 공간으로서의 안채와 남성의 공간으로서의 사랑채가 공간적으로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家禮의 主行禮空間 역시 남성의 공간으로서 외부인의 출입이 안채보다는 용이하였던 사랑채로 轉移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行禮의 主空間이 사랑채로 轉移되었음은 현재 대부분의 宗家에서 喪葬禮와 祭禮가 안채가 아닌 사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가 있다. 하지만 사랑채가 있는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는 忌祭에는 여전히 안채에서 祭祀가 이루어지고, 喪禮의 경우에 있어서도 臨終은 안채의 안방에서 맞이하는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는 안채가 行禮의 主空間이었으나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行禮의 主空間이 사랑으로 전이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行禮의 主空間이 사랑채로 전이되는 것은 앞서 보았던 사랑채의 공간적 확대와 그 궤를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宗家의 경우에는 빈번한 祭禮⁶⁴⁾ 와의 관련속에서 앞서 살펴보

63) 中國의 禮書인 「禮記」의 内側편에는 '禮는 부부간에 서로 삼가는 데서 시작된다. 집을 지을 때는 内外를 구분하여 남자는 바깥에 거하고, 여자는 안쪽에 거하며, 문단속을 철저히 한다. 남자는 함부로 안으로 들지 않고, 여자는 밖에 나가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주택의 공간구성에 있어 남녀의 공간이 서로 구분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64) 宗家の 경우 四代奉祀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高祖에서부터 아버지에 이르는 8분의, 再嫁한 경우를 포함하면 10여 분의 神位를 모시게 된다. 또, 不遷位가 있는 경우에는 두분의 神位가 또 첨가되어 忌祭만 하여도 일년 열두달 거의 빠지는 달이 없을 정도로 행하여지게 되며, 거기에 四時祭를 포함하고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도 祭祀를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므로 宗家에서의 祭禮는 생활의 일부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있듯이 사랑을 증축하거나 別棟으로의 사랑채 신축이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别棟으로 사랑채를 신축한 경우에는 그 기능이 주로 祭禮와 관련된 行禮空間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므로 祭廳이라 불리우기도 하였다. 조선후기에 와서 사랑과 廳事의 용어상의 혼란은 이러한 行禮空間의 轉移過程에서 일어났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行禮의 主空間이 안채로부터 사랑채로 轉移되어 감으로써 사랑의 규모가 커져야 하였음은 물론이고, 冠婚喪祭禮의 行禮에 있어서 상징적인 구심점이 되었던 祠堂과의 관계가 사랑의 배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班家에 있어서는 祠堂과 사랑채가 거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장소에 위치하는 긴밀한 관계를 지니며, 같은 向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으로 작용하게 되었으며⁶⁵⁾, 祠堂이 안채의 동쪽에 있는 것이 「家禮」에서의 원칙이었으므로 사랑채 역시 주택내에서 祠堂과 마찬가지로 동쪽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이다.

사랑채의 평면 역시 사랑이 行禮의 主空間이 되는 과정에서 行禮에 적합한 공간구조로 변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사랑채 평면의 변화 역시 안채에 접속되어 증축된 경우와 别棟으로 신축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안채에 접속된 경우는 觀稼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우선 구조적인 측면에서 家舍規制에 규정되어 있었던 3량구조에서 규모가 큰 5량구조로 바뀌었으며, 전면에는 퇴칸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안채에서의 공간구조와 마찬가지로 마루와 방을 병렬로 구성하여 마루는 堂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房은 室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건물의 전면에 퇴칸을 설치한 것은 안채의 경우에서처럼 家禮書의 室 전면에 堂이 위치하였던 것을 형식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사랑채를 别棟으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사

랑채의 역할이 不遷位祭祀와 時祭와 같은 祭禮의 行禮空間이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家禮書에서의 堂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였으므로 마루가 거주를 위한 방보다 훨씬 크게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4. 맷음말

이상에서 16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班家의 형식이 변화하여 조선후기의 典型的인 形式으로 정착하여 가는 과정을 家禮의 시행과정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고려말 性理學과 함께 도입된 家禮는 鮮初부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력하게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우선 家廟制의 실시를 시작으로 葬禮에 있어서 三年喪제도가 실시되어 15세기 말 成宗代에는 祭禮와 葬禮에 있어서 京中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士大夫家에 어느 정도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婚禮와 冠禮의 시행여부는 불투명하였으며, 祭禮와 葬禮의 시행도 「家禮」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형식적인 측면이 강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家禮」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冠婚喪祭禮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16세기에 들어서부터이다. 15세기 말부터 중앙정계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士林들이 수차례의 土禍를 통하여 낙향하게 되고, 이를 낙향 士林을 중심으로 鄉村사회에까지 性理學의 질서가 보급됨에 따라서 家禮의 시행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家禮」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家禮의 실천적인 측면만이 아닌 학문적인 측면에서의 발전도 있어 16세기 중기 이후에는 家禮書가 간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들 家禮書는 祭禮書에서 葬葬禮書, 또 冠婚喪祭의 내용을 모두 구비한 四禮書로 발전하였는데, 이러한 발전과정은 家禮의 시행과정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또한, 16세기에 들어서 여러가지 사회제도와 관련되어 있던 家禮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인 사회제도의 변화도 함께 수반되었다. 奉祀制를 비롯하여 養子制 相續制 家婦法 등은 15세기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65) 최영기, '宗家宅 祭禮 空間에 關한 研究', 국민대 석사논문, 1984 참조

이상에서와 같은 16세기의 사회전반적인 변화가 班家의 형식과 무관할 수는 없었다. 당시의 주택은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단순한 생활공간 만이 아닌 家禮의 실천적 공간이었으므로 16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家禮의 시행이 일반화됨에 따라 班家형식의 변화가 수반될 수 밖에는 없었던 것이다.

家禮의 시행이 일반화되는 16세기를 전후하여 이루어지는 班家의 형식변화는 우선 祠堂의 건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祠堂이 冠婚喪祭禮의 行禮에 있어서 구심점이 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家禮가 도입되었던 고려말부터 일부 계층에서는 祠堂을 세우기도 하였으나 祠堂의 건립이 京中에서 뿐만 아니라 外房의 鄉村에까지 일반화되는 것은 16세기 中宗代에 이르러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형식에 있어서는 奉祀代數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 따라 3개 혹은 4개의 爰室이 있는 두가지 형식이 있었다. 하지만 家禮를 존중하는 경향이 커짐에 따라 四代奉祀를 따르게 되었고, 그에 따라 4개의 爰室을 설치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안채는 「家禮」에 따른다면 실질적인 冠婚喪祭禮의 主行禮空間이다. 따라서 家禮의 시행에 따라 안채의 형식 역시 行禮에 적합한 공간으로의 변화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家禮書에서의 正寢 형식은 전면에 堂을 두고 후면에는 東房西室의 구조를 보여준다. 하지만 현존하는 안채중에서 이러한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경우는 없다. 다만 비대칭형의 안채가 공간구조적으로나 형태적으로 家禮書의 正寢의 형식을 따르고

있고, 家禮의 시행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16세기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家禮와 관련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16세기는 「家禮」에 의한 冠婚喪祭禮의 시행에 따라 비대칭형 안채가 성립되는 시기이며, 동시에 기존의 대칭형 안채에서 비대칭형 안채로 변화하는 시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사랑은 15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중문에 부속되어 손님 등을 접대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된 작은 규모의 공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6세기를 전후하여 家禮의 시행이 일반화되고 안채가 행례의 주공간으로서는 협소하였던 것과 더불어 내외사상 등의 영향으로 行禮의 主空間이 안채에서 사랑으로 轉移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에 따라 사랑은 몸체에 접속되어 증축되거나 별동으로 신축함으로써 공간적 확대가 있게 되었다. 또한 行禮의 主空間이 됨으로서 공간구조에 있어서도 家禮書의 正寢의 구조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의 변화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班家에 있어서의 사당, 안채 및 사랑채 등의 변화는 家禮의 단계적인 시행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변화의 시점은 16세기를 전후한 시기였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후기의 典型적인 班家의 形式이 16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변화를 겪으면서 정착된 것이었음을 말하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班家의 연구에 있어서는 16세기의 이와 같은 변화과정이 보다 중요하게 다우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Family Ritual and the Plan Change of the Yangban Houses in the 16th Century

Kim, Ki Joo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Graduate Student)

Kim, Sung Woo

(Yonsei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ABSTRACT

Most of the studies on Yangban Houses dealt with the existing houses which were constructed, in most part, after the 17th centur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identify the actual process of change from before the 17th century which is critical in understanding the history of residential architecture of the Chosun Dynasty.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at the architectural condition after the 17th century is the result of the major change in ⁵⁹⁾ound the 16th century, and the prime motivation of that change was initiated by the family ritual which become very important social and ideological base of the change. To be able to practice the family ritual, the spatial arrangement had to be changed. Man's quarter had to be enlarged, which a stone-floored room was added on one side of the centurnal wooden floor of the lady's quarter. Also, family shrine was erected on eastern side of the site.

Thus, unless the major change in the 16th century, which was caused by the practice of family ritual, is understood, the study of historical background of Yangban houses can never be complete.